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재단
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정 2004. 11. 24.
개정 2007. 02. 21.
개정 2009. 06. 01.
개정 2011. 02. 22.
개정 2011. 07. 04.
개정 2013. 03. 06.
개정 2014. 06. 13.
개정 2016. 03. 11.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03. 08.
개정 2017.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1163)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목적)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다.

제3조(인증의 의미) 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학습성과를 지원, 관리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및 교육 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 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인증대상)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인증 대상은 4년제 간호학사 학위 프로그램, 3년제 간호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 간호사-학사학위 특별편입(RN-BSN) 프로그램,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②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졸업생이 1회 이상 배출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운영 개시 이전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제5조(위원회) ①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증평가위원회와 판정위원회, 기준개발위원회, 조정위원회,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교육인증평가위원회, 기준개발위원회,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정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2 장 평가·인증

제6조(인증기준) ① 평가원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한다.

② 인증기준의 개정안은 기준개발위원회가 마련하며, 대학 및 임상 등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③ 평가원은 대학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④ 인증기준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7조(평가·인증 신청) ①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대학이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불가' 판정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③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7조의2(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에 따른 평가·인증 신청) ① 대학이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로 인하여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학은 본 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학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6.28.]

제8조(평가방법) 간호교육인증평가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체평가: 간호교육기관에 의해 자체 평가를 실시함.
2. 서면평가: 간호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평가단이 서면 평가를 실시함.
3. 현지 방문평가: 간호교육기관을 평가단이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함.

제9조(자체평가 지원) ① 평가원은 평가를 신청한 간호교육기관이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설명회, 자문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② 위 제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0조(평가·인증 운영)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운영과 제반 정책 및 절차, 기준에 대한 검토·자문을 위하여 교육인증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1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원은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풀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활동, 평가위원 연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④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풀 구성과 관리,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2조(평가의 윤리) ① 평가원은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 윤리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② 평가·인증 관련 위원회의 위원, 평가위원, 직원 등은 위 제1항의 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평가·인증을 실행해야 한다.

제13조(조정활동) ① 평가위원 간 또는 평가단 간 평가결과의 일치도를 높이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4조(판정활동) ①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 평가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의 조정논평서 등을 검토하고 판정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의 인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6.12.13.>

②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5조(평가·인증 절차)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12.13.>

1. 평가·인증 실시 공고
2.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
3. 대학의 자체평가

4.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6. 평가결과의 조정
7.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의 사실 여부 검토
8. 평가결과의 재조정(필요 시)
9. 평가결과의 판정
10. 이사회 승인
11. 평가결과 통보(평가결과보고서 포함)

② 위 제1항의 절차에 따른 평가서식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6조(결과 통보) 평가원은 해당 간호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피평가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 및 판정) ① 평가결과 판정은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에서의 평정결과에 따른다.

②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한다.

③ 평가항목 및 평가영역의 평정기준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④ 삭제 <2016.12.13.>

제18조(판정유형)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유형은 '인증(5년)', '인증(3년)',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인증불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13.>

1.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2.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 인증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②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③ 제1항 제4호의 판정유형은 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다. <신설 2016.12.13.>

제19조(인증기간) ① 제18조 제1항의 판정유형에 따른 인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 1. '인증'의 인증기간은 5년 또는 3년으로 한다.
 - 2. 삭제
 - 3.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의 경우(졸업생 배출 전까지)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 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인증유예(한시적 인증)'의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인증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 ③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 ④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재심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14.6.13>
- ⑤ 재심위원회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1조(수수료) ① 평가원은 평가·인증 시행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이를 공지한다.

- ② 간호교육기관은 평가·인증 신청 시 평가원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대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3 장 유지·관리 및 결과활용

제22조(인증유지) ①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5년)'인 경우 인증기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② 인증 받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인증기간 중에 프로그램 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인증 유효 기간 중 인증 받은 간호교육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인증유지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3조(현황보고)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교수, 교육과정, 실습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교육현황자료를 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사업보고) 평가원은 당해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5조(평가·인증 결과 공개) ① 평가원은 평가·인증 결과 인증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

- ② 평가·인증 결과 작성된 평가결과보고서는 해당 대학에 한하여 공개한다.

③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 판정의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26조(평가·인증 결과 활용) 평가·인증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다.

1. 평가·인증 결과는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간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평가원은 평가·인증 결과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평가·인증 결과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평가원은 간호교육기관 신설 및 증원에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도록 결과 및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 의무) ① 평가·인증 업무에 참여한 모든 위원과 직원은 업무 중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평가·인증 신청 간호교육기관이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간호교육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28조(문서관리 및 보존) 평가원은 평가·인증 수행을 위해 업무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관리·보존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원장이 정한다.

제30조(개정 규정 적용) 회차의 평가·인증 실시 공고 이후 규정이 개정된 경우, 해당 회차의 평가·인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고 시점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 공고 시점에 예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3.8.]

부 칙 <2009. 2.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인증 판정유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 판정유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판정유형, 인증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7. 3. 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